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순 서

□ 5분 자유발언 : 3명

- 김미영 의원 :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 하병오 의원 : 거창군의회 혁신, 신뢰받는 의회는 민주적 운영에서 시작된다.
- 구교천 의원 : 딸기 고설재배 폐상토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보 고 자 : 김홍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5건(조례 2, 일반의안 3)
- 보 고 자 : 신중양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2건(조례 2)
- 보 고 자 : 구교천 위원장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건(인구교육과, 농업소득과, 체육시설사업소)
- 보 고 자 : 신중양 총무위원장 · 구교천 산업건설위원장

□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5건



의 사 일 정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 31.(금)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제2차 본회의】 1.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 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거창군 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의사일정 변경의 건 【산 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1 ※ 총무위원회 : 2~6 ※ 산업건설위원회 : 7, 8 ※ 총무산업건설위원회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7. 31. 10:00)

5 분 자 유 발 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김 미 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주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창군은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상품권은 판매 시작 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 매진되고, 지류상품권 역시 매월 1일
금융기관 영업 시작 전부터 긴 대기 줄이 이어
지며 오전 중에 대부분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창사랑상품권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창군은 지금까지 6,387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상품권 사용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 상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이며, 이제 거창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품권 정책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불편이나 민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의 조기 소진 현황은 물론 구매 대기 현황, 가맹점 이용 실적, 업종별 매출 변화, 군민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한다면 거창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국비 확보와 정부 인센티브 지원,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거창군이 다음 세 가지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높은 구매 수요를 고려하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수요가 확인된 만큼 현재보다 최소 100억 원 이상 발행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용 실태와 경제적 효과를 데이터화하여 국비
확보와 정책 개선의 근거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군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등 다양한
국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거창사랑상품권은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닙니다.
군민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며, 지역 상권을 지켜내는 지역경제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높은 군민 수요를
바탕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지키기 위해 지역상품권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7. 31. 10:00)

5 분 자 유 발 언

**거창군의회 혁신, 신뢰받는 의회는
민주적 운영에서 시작된다.**



하 병 오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표주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이홍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병오 부의장입니다.

본의원은 거창군의회가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지방자치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변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거창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주민과의 소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의회는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거창군의회도 군민의 기대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의회를 확립해야 합니다. 의회의 민주주의는 회의에서 시작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시작되지만, 성실한 회의 참석과 자유로운 토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물론 다양한 회의와 숙의체계는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고유의 역할은 물론, 지방시대의 미래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핵심 무대입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회의 참석은 단순한 출석이 아니라 군민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이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한 회의는 승패를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히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회의 문화가 정착될 때 군민은 거창군의회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대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사무실 안에서만 존재하는 기관도 아니고, 의원 개인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담아내는 공적기관입니다. 언제나 군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회의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참여와 소통의 과정이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질 때 주민 참여는 제도화 되고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의회의 정책이 되고, 의회의 결정에 주민의 뜻이 담길 때 비로소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셋째,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의정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회의 결과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민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한 의정활동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쌓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과정이 반복되고 실천될 때 군민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권한은 법이 부여하지만, 그 권위는 군민의 신뢰가 완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더욱 책임 있게 행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변화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책임 있고 투명한 의회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군민의 신뢰를 받는 거창군의회,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창군의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7. 31. 10:00)

5 분 자 유 발 언

**딸기 고설재배 폐상토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구 교 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주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 교 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딸기 고설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상토, 이른바 ‘폐상토’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딸기 고설재배는 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재배 방식으로, 오늘날 딸기 농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설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재배가 끝난 뒤 발생하는 폐상토의 처리 문제도 새로운 농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딸기 고설재배에 사용되는 상토는 코코피트, 피트모스, 왕겨, 펄라이트 등으로 구성되며, 농가의 재배 방식과 관리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교체하게 됩니다.

병해가 없고 물리성이 유지된 상토는 세척과 소독, 새 상토 혼합 등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개별적으로 세척·소독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고, 여러 해 사용한 상토는 입자가 부서지거나 염류와 병원균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딸기 재배에 다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출된 폐상토를 농가가 적정하게 처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논이나 밭을 함께 경작하는 농가는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 토양개량재나 퇴비 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농경지가 없는 딸기 전업농과 귀농 농가는 폐상토를 톤백이나 마대에 담아 돈을 들여 쓰레기 처리장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토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무겁고 부피도 큼니다. 이를 고설베드에서 꺼내고, 포장하고, 운반하는 모든 과정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리할 곳을 제때 찾지 못하면 농장 한쪽에 장기간 쌓아두게 되고, 이는 농가의 부담을 넘어 환경과 농촌 경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창 내 고설재배 시설의 사용 연수가 늘어나면서 상토 교체 시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상토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본격화된 뒤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발생량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폐상토는 무조건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 성분과 상태에 따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코코피트, 피트모스, 왕겨 등 유기질 비중이 높은 폐상토는 수분 흡수력이 있고 퇴비 더미에 공극을 형성할 수 있어, 적절한 선별과 안전성 확인을 거치면 축분 퇴비의 수분조절재나 팽화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건조되고 이물질과 곰팡이 등이 제거된 폐상토는 우사나 퇴비사의 깔짚 보조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 왕겨, 식물성 잔재 등과 함께 적정하게
퇴비화하고 충분히 부숙한다면 과수원이나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 체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력 부족과 기후변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 현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별도의 농경 기반이 없는 딸기
전업농과 귀농 농가는 폐상토와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폐상토의 수거와 운반, 안전성 검사와
자원화를 위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축산농가의 수분조절재 비용 절감과 농업 부산물의 자원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상토와 영농 부산물이 농가의 골칫거리로 남아 불법 투기나 불법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개 요

- 기 간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 장 소 : 집행부 대회의실(4층)
- 내 용 : 406개 항목(공통사항 및 부서별)
(별도 유인물 참고)
- 대 상 : 국·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 읍·면



거 창 군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목 차

I . <u>감사목적</u>	1
II . <u>감사일정</u>	1
III . <u>감사위원회 구성</u>	1
IV . <u>감사자료 및 서류제출(요구)</u>	2
V . <u>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u>	2
VI . <u>감사진행 순서</u>	2
VII . <u>감사요령</u>	2
VIII . <u>감사에 따른 유의사항</u>	3
IX . <u>감사결과 처리</u>	4
1. <u>증인선서문</u>	5
2. <u>증인출석요구서</u>	6
3. <u>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좌석 배치도</u>	7
4. <u>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u>	9
5. <u>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서식</u>	58

부서별 현황

1. 기획예산담당관	14
2. 전략담당관	16
3. 도민체전기획단	17

행 정 국

4. 행 정 과	18
5. 인구교육과	20
6. 민원소통과	22
7. 재 무 과	23

경제복지국

8. 경제기업과	25
9. 문화예술과	27
10. 관광진흥과	28
11. 복지정책과	29
12. 행복나눔과	30

안전건설국

13. 안전총괄과	32
---------------------------	----

14.	<u>산 립 과</u>	34
15.	<u>환 경 과</u>	36
16.	<u>건설교통과</u>	39
17.	<u>도시건축과</u>	42

농업기술센터

18.	<u>농업축산과</u>	44
19.	<u>미래농업과</u>	46
20.	<u>농업소득과</u>	48
21.	<u>행복농촌과</u>	50

보 건 소

22.	<u>보건정책과</u>	51
23.	<u>건강증진과</u>	52

사 업 소

24.	<u>수도사업소</u>	53
25.	<u>체육시설사업소</u>	55
26.	<u>거창골프장사업소</u>	56
27.	<u>거창사건사업소</u>	5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I. 감사목적

- 거창군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II. 감사일정

- 대상기관 : 국·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읍·면
 - ※ 필요에 따라 보조금 등 지급 단체·법인·기관도 포함
- 감사범위 : 2025. 5. 1. ~ 2026. 6. 30.
 - 자료 작성기간 : 2025. 1. 1. ~ 2026. 6. 30.
 - 업무의 연관 및 연속성 등 감안 감사범위 이전 사무도 포함 가능
- 감사기간 :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9일 이내)
- 장 소 : 집행부 대회의실(4층)

III. 감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비고
김홍섭 의원	신재화 의원	하병오 의원 박수자 의원 신중양 의원 구교천 의원 강우용 의원 이흥희 의원 백종숙 의원 김미영 의원	최영미	고영운 전형성

* 배 석 : 박혜진, 전병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Ⅳ. 감사자료 및 서류제출(요구)

- 요구자료 : 붙임 “작성서식”
 - 자료제출 기한 : 2026. 8. 11.
- 서류제출 : 감사기간 중 요구되는 서류
- 현장확인 : 감사기간 중 필요시 대상지 선정 현장 방문

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공무원 :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장
- 기타증인 및 참고인 : 필요할 때 출석요구

Ⅵ. 감사 진행순서

순 서	내 용	비 고
선언·인사	○ 감사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 원 장
선 서	○ 군수 및 간부공무원 선서	군 수 및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 군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군 수
감사실행	○ 부서장 인사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 서 장
	○ 감사 항목별 감사(질의·답변) ○ 현장 확인 및 관계인 증언	감사위원 관계공무원
총평·종료	○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Ⅶ. 감사요령

- 방 법
 - 제출된 서류 및 자료 감사,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현지 확인(부서 및 사업장),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등

○ 참고사항

-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반드시 증인선서 후 증언(선서문 별첨, 참고인 제외)
- 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음(위원회의 의결로 제한 가능)
-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진행
- 감사 중 추가적인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자진출석 및 제출의 형식으로 함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현장 확인 실시
-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VIII.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

○ 감사 한계

-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 제척과 회피

- 위원회는 감사위원이 회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음(제척)
- 감사위원이 감사대상사무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음(회피)

○ 주의 의무

-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IX. 감사결과 처리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감사보고서 채택
-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 요구

붙임 1. 선서문

2. 증인출석 요구서

3.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서식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8월 일

○ 선서인 소 속 : 거 창 군
직 위 : 군 수
성 명 : 이 홍 기(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증인출석 요구서

거 창 군 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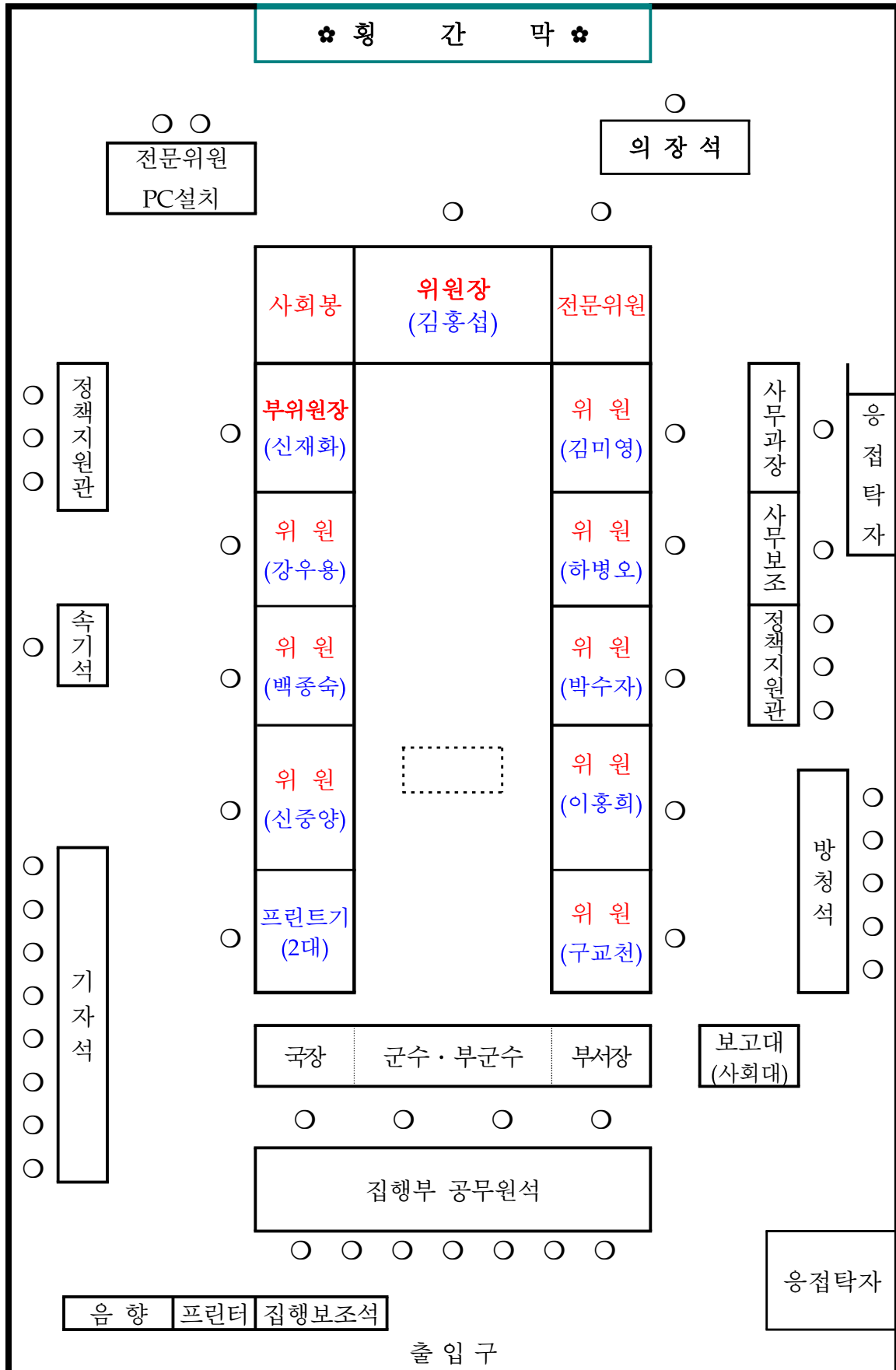
거창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감사기간 중
2. 출석장소 : 감사일정 및 장소 참조
3. 신문요지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출석대상자 : 군수, 부군수 및 해당 국·담당관·과·소장, 읍·면장

2026년 8월 일

거 창 군 의 회 의 장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좌석 배치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작 성 요 령 》

○ 작성기간 : 2025. 1. 1. ~ 2026. 6. 30.

※ 업무의 연관 및 연속성 등 감안 감사범위 이전 사무도 포함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난 3년간 사무도 요구할 수 있음)



거창군의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황

□ 총 건

- 공 통 : 24건
- 부 서 별 : 382건

부 서 명		항 목 수	부 서 명		항 목 수
기획예산담당관		14		산 립 과	23
전략담당관		10		환 경 과	23
도민체전기획단		1		건설교통과	24
행 정 국		66		도시건축과	19
	행정과	19	농업기술센터		63
	인구교육과	14		농업축산과	20
	민원소통과	13		미래농업과	13
	재무과	20		농업소득과	17
경제복지국		70		행복농촌과	13
	경제기업과	14	보건소		23
	문화예술과	17		보건정책과	11
	관광진흥과	10		건강증진과	12
	복지정책과	13	수도사업소		11
	행복나눔과	16	체육시설사업소		10
안전건설국		104	거창골프장사업소		4
	안전총괄과	15	거창사건사업소		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통)

구 분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공 통 (24건)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2. 직원 및 사무분장 현황 3.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4. 군정질문 조치현황 5. 5분 자유발언 조치현황 6. 의원발의 조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7. 연구용역 현황 8.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 현황 9.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 10.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11. 사업 중 미착수 사업현황 12. 부서별 예산변경 사용현황 13. 국비사업 추진현황 14. 도 재정건의사업(도지사 포괄사업) 예산 확보현황 15.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현황 16.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17. 집단민원 처리현황 18.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현황 19.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20. 출연기관 지원현황 21. 민간위탁 현황 22.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3. 기금운용현황 24. 융자금 및 채권 미회수 현황	항목별 작성서식 “별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부서별)

□ 기획예산담당관(14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결과 - 주요업무 자체평가, 정부합동평가 등 - 수상현황					기획담당																													
2	○ 제안제도 추진현황 - 건수(제안/채택) - 채택제안 내용(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현황 등) -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등					기획담당																													
3	○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소속</th> <th colspan="3">중복개수</th> <th rowspan="2">위원회명</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3개</th> <th>4개</th> <th>5개 이상</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성명	소속	중복개수			위원회명	비고	3개	4개	5개 이상								기획담당												
성명	소속	중복개수			위원회명			비고																											
		3개	4개	5개 이상																															
4	○ 통합브랜드 관리현황 - 통합브랜드 선정 내역 - 통합브랜드 활용 현황 - 통합브랜드 연도별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3년간)					기획담당																													
5	○ 군정 홍보 현황(전 부서 · 읍면) - 광고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table border="1"> <tr> <th>부서명</th> <th>주요내용</th> <th>지급금액</th> <th>비 고</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 신문구독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table border="1"> <tr> <th rowspan="2">부서명</th> <th colspan="2">구독내역</th> <th rowspan="2">지급금액</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일간지</th> <th>주간지</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 공고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table border="1"> <tr> <th>부서명</th> <th>공고건수</th> <th>지급금액</th> <th>비 고</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부서명	주요내용	지급금액	비 고					부서명	구독내역		지급금액	비고	일간지	주간지						부서명	공고건수	지급금액	비 고					홍보담당	
부서명	주요내용	지급금액	비 고																																
부서명	구독내역		지급금액	비고																															
	일간지	주간지																																	
부서명	공고건수	지급금액	비 고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군정 홍보현황 <table border="1"> <tr> <th>연도</th> <th>플랫폼명</th> <th>게시건수</th> <th>평균조회수</th> <th>홍보내용</th> <th>연간홍보비용</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연도	플랫폼명	게시건수	평균조회수	홍보내용	연간홍보비용							
연도	플랫폼명	게시건수	평균조회수	홍보내용	연간홍보비용													
6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 부서명, 사업명, 기간, 사업량, 사업비(재원), 심사결과 등					예산담당												
7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예산담당												
8	○ 자체감사 실시현황(사업소, 읍면) <table border="1"> <tr> <th>부서명</th> <th>지적건수</th> <th>처분요구</th> <th>조치결과</th> <th>비고</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징계포함</td> </tr> </table>					부서명	지적건수	처분요구	조치결과	비고					징계포함	감사담당		
부서명	지적건수	처분요구	조치결과	비고														
				징계포함														
9	○ 상급기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총괄 작성) <table border="1"> <tr> <th>감사기관</th> <th>지적건수</th> <th>처분요구</th> <th>조치결과</th> <th>비 고</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징계포함</td> </tr> </table> 주) 연도별 별도 작성					감사기관	지적건수	처분요구	조치결과	비 고					징계포함	감사담당		
감사기관	지적건수	처분요구	조치결과	비 고														
				징계포함														
10	○ 청렴한 거창구현 실현을 위한 추진현황					감사담당												
11	○ 일상감사(계약심사 포함) 현황					감사담당												
12	○ 각종 소송, 행정심판 총괄 현황 - 접수, 진행, 종결, 승소율 등					규제혁신												
13	○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사항, 수당지급 현황					규제혁신												
14	○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 - 착수금, 승소사례비, 패소배상금 등					규제혁신												

□ 전략담당관(10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고향사랑기금 운영 현황 - 기금사업 발굴 현황 - 모금 실적, 답례품 지급 현황, 운영비 지출 현황 - 지정 기부 운영 현황	전략담당
2	○ 공모사업 선정현황 - 부서별 신청 대비 선정, 사업비 확보 등	전략담당
3	○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	전략담당
4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추진현황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평가결과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전략담당
5	○ ‘거창군 이음추진단’ 운영 현황	전략담당
6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추진 사항 - 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행복맘센터, 공공산후조리원 등 추진 현황 및 계획	행정의료 타운
7	○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 농가형, 공공형 - 농업 근로자 숙소사 건립 및 운영	농촌일손
8	○ ‘거창군 천상공원’ 건립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 화장시설 주변 주민 지원 추진 현황	공공시설
9	○ 지역활력타운 조성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공공시설
10	○ 대형 공공건축 공사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공공시설

□ 도민체전기획단(1건)

[illegible]

□ 행 정 과[19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공무원 정·현원 현황(부서별, 직급별)	행정담당																														
2	○ 공무원 인사운용 현황 - 명예퇴직 및 퇴직준비교육과전 공무원 현황 - 타시군 전출자 현황 - 발탁인사 및 전보희망제, 부서장추천제 반영 추진현황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현황 - 공무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3년 이상) <table><tr><th>부서명</th><th>직급</th><th>성명</th><th>담당사무</th><th>사유</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연도별 결원 예측 및 충원계획(육아, 출산휴가 등) -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현황 - 공무원 안식휴가 시행 추진 실적 및 성과 - 실적 우수자 인센티브 현황	부서명	직급	성명	담당사무	사유	비고							행정담당																		
부서명	직급	성명	담당사무	사유	비고																											
3	○ 신규 공무원(임기제 포함) 임용현황 <table><tr><th>연도</th><th>계</th><th>본청</th><th>직속.사업소</th><th>읍면</th><th>비고</th></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tr><td>2024년</td><td></td><td></td><td></td><td></td><td></td></tr><tr><td>2025년</td><td></td><td></td><td></td><td></td><td></td></tr><tr><td>2026년</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연도	계	본청	직속.사업소	읍면	비고	계						2024년						2025년						2026년						행정담당
연도	계	본청	직속.사업소	읍면	비고																											
계																																
2024년																																
2025년																																
2026년																																
4	○ 공무원 훈계 등 행정상 징계 현황 - 중앙부처, 도, 자체 구분 작성	행정담당																														
5	○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 사업비, 횟수, 인원 등 ※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 사설학원 포함	행정담당																														
6	○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 기간, 대상국, 인원(민간인 포함), 경비, 연수목적 등	행정담당																														
7	○ 공무원 근속승진 현황 <table><tr><th>부서명</th><th>직급</th><th>대상자</th><th>근속연수</th></tr><tr><td></td><td></td><td></td><td></td></tr></table>	부서명	직급	대상자	근속연수					행정담당																						
부서명	직급	대상자	근속연수																													
8	○ 기간제근로자 현황 <table><tr><th>연번</th><th>부서명</th><th>인원</th><th>주요업무</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연번	부서명	인원	주요업무	비고						행정담당																				
연번	부서명	인원	주요업무	비고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 공무직근로자 관리현황						
	연번	부서명	성명	최초임용	근무연수	업무명	
	※ 공무직, 청원경찰 구분 작성						
9	○ 읍면 배치 간호직 공무원의 근무현황 -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간호직 공무원 대상 - 근무처, 담당업무						행정담당
10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내역(2025~2026) - 채용 현황, 근무지, 담당업무 등						행정담당
11	○ 공무원 사기양양시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 맞춤형 복지제도 포함						서무담당
12	○ 공무원단체 보험가입현황 및 보장내역 - 보험수혜 실적						서무담당
13	○ 주민자치회(센터) 운영현황 - 군 주관 주민자치 추진실적 - 읍면 자치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민자치
14	○ 국민운동 3단체 및 민주평통 지원현황 ○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주민자치
15	○ 이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예산 집행 내역						주민자치
16	○ 자치경찰사무 추진현황						주민자치
17	○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현황 - 교류현황, 교류성과						주민자치
18	○ 출향인 네트워크 및 교류 현황 - 향우회 및 향토인재(중앙부처, 도청) 현황 - 향우회와 교류 및 군정협력 추진 실적 - 장학금, 아림1004등 기부 및 지역 농특산물 구매내역 등						주민자치
19	○ AI 행정도입 관련 현황 - 업무 환경 분야, 대군민 서비스 분야, 관련 교육 등						정보화

□ 인구교육과(14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 - 경남도내 군부 인구 추이(2022~2026년) - 최근 5년간 사망자 및 출생자 현황 - 인구증가 시책 추진 실적(전입, 출산, 양육) - 고향올래(로컬유학) 프로젝트 추진 현황	인구정책																				
2	○ 로컬유학(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 공공임대주택 신축 및 인구 유입 현황	인구정책																				
3	○ 청년친화도시 운영 현황 - 정착, 자립, 결혼, 주거, 창업, 커뮤니티 지원 등 -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	청년정책																				
4	○ 미래 명품 교육도시 조성 추진 현황 - 거창초 학교복합시설건립사업 추진 현황 -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 현황	교육진흥																				
5	○ 학령인구 감소 추이 및 대응 방안 -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및 학교별 학생 정원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교육진흥																				
6	○ 장학사업 운영 현황 - 장학기금 모금 현황 및 집행 현황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승강기대,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내역	교육진흥																				
7	○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성과 - 관내 초·중·고별 지원 현황(최근 3년)	교육진흥																				
	<table><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학교명</th><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4">사업비(재원별)</th><th rowspan="2">지원내용</th></tr><tr><th>계</th><th>군</th><th>교육청</th><th>자부담</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연도	학교명	사업명	사업비(재원별)				지원내용	계	군	교육청	자부담									
연도	학교명				사업명	사업비(재원별)				지원내용												
		계	군	교육청		자부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8	○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실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위탁, 직영 등) - 우수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 내역 - 글로벌 학습도시 운영 실적 - 대학연계 평생교육사업 추진 현황						평생학습
9	○ 평생학습 축제 개최 현황 및 문제점						평생학습
10	○ 청소년 사업추진 현황 -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 청소년 대상 축제 행사 등 추진 현황						청소년
11	○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등						청소년
12	○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등						청소년
13	○ 거창홍사단 수탁현황 - 청소년 수련 및 이용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						청소년
	시설명	시설장	종사자수	이용자수(연)	지원액(천원)		
					2025	2026 증감	
14	○ 거창 군립 한마음도서관 운영 및 관리현황 - 현황, 이용실적,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U-도서관 운영현황 -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

□ 민원소통과(13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군민감동 민원행정 실천 추진현황 - 전자민원(정부24) 발급현황 - 민원서비스 지연 및 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실적 -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현황 - 자동차 등록현황(최근 3년간, 승용, 승합, 화물 등)	민원담당
2	○ 유기한 민원 및 복합민원 처리 추진현황 - 유기한 민원 현황(개요, 추진내용, 단축률 등) - 복합민원 처리현황(민원단축 인센티브 추진 실적포함)	민원담당
3	○ 무인 민원발급기 관리현황 - 무인민원 발급현황(전년도 대비 발급 및 사용실적)	민원담당
4	○ 여권 발급현황 - 여권 발급 현황 - 여권민원 야간예약 처리제 및 우편서비스 운영실적	민원담당
5	○ 원문정보공개 현황(2024년~2026년) - 경남도내 타 지자체 자료 첨부	민원담당
6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지적 재조사
7	○ 형질변경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 현황	지적담당
8	○ 우리고장 지명 일제정비 사업 추진현황	토지정보
9	○ 개업공인중개사 현황	토지정보
10	○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 - 점검횟수, 처분건수 및 내용 등	토지정보
11	○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	위생담당
12	○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현황	위생담당
13	○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추진 현황 -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위생담당

□ 재 무 과(20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목표대비 부과·징수 실적 등	부과담당														
2	○ 지방세 세무조사 부과 현황 - 목표대비 발굴(세무조사) 실적 등	부과담당														
3	○ 지방세 구제 및 비과세·감면 현황 -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현황 - 비과세·감면 현황(100만원 이상)	부과담당														
4	○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현황 - 연도별 인원 및 금액	부과담당														
5	○ 각종 계약체결 현황(읍·면 포함) - 전자입찰, 도급(수의)계약 현황 ※ 공사(10백만원 이상), 용역(10백만원 이상), 물품제조(5백만원 이상) ※ 읍·면 ⇒ 2026년도분 자료 제출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수의계약 중 당해연도 3건 이상 계약한 업체 현황 ※ 공사(10백만원 이상) <table border="1"><tr><th>연번</th><th>연도</th><th>계약업체</th><th>대표자</th><th>계약건수</th><th>계약금액</th><th>비고</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연번	연도	계약업체	대표자	계약건수	계약금액	비고								경리담당
연번	연도	계약업체	대표자	계약건수	계약금액	비고										
6	○ 각종 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유 포함)	경리담당														
7	○ 각종 공사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1억원 이상) (계약자 및 회사명)	경리담당														
8	○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 - 시공업체 보수 현황 - 시행기관 보수 현황(하자기간 이후 보수 포함)	경리담당														
9	○ 법인카드 포인트 활용 현황	경리담당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0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전출) 현황 (2024~2026년도 구분)	정리담당
11	○ 금고 지정 및 자금 운용 현황 (2025년도말 기준) - 금융기관별 · 회계별(기금 포함) 금고지정 현황, - 회계별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징수 현황 등	세입관리
12	○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 - 과오납금 발생액 대비 반환 실적 등	세입관리
13	○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 체납액 현황 - 압류 및 정리보류 현황 - 징수대책 추진 현황	세입관리
14	○ 세외수입 관리 현황 -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 - 주요 체납사유 등	세입관리
15	○ 공유 · 일반재산 관리 현황 - 매각·취득·교환, 대부료 부과·체납 등 - 공유재산 대부현황(토지,건물:임대인,임대목적 등)	재산관리
16	○ 정수물품 관련 각종 현황 - 관리·구매·매각·폐기·관리전환 구분 작성	재산관리
17	○ 공용차량 관리 현황 - 총괄 및 차량 상세 현황 - 보험가입 현황 - 위탁관리 차량 현황 - 연도별 교체 차량 현황	재산관리
18	○ 공공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현황 - 군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읍 · 면 구분 작성	재산관리
19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26년 기준)	부동산 평가
20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 건수 및 부과·징수액	부동산 평가

□ 경제기업과(14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 청년몰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시장경제
2	○ 거창사랑상품권 운영현황 -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현황	시장경제
3	○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현황 - 사업개요, 추진성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시장경제
4	○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내역 - 국책사업 추진 현황(승강기 제2시험타워 신축, 승강기산업복합관 운영 활성화, 도시브랜딩 사업) - 스마트승강기 개발 지원 현황(공동모델 개발) -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현황	기업 승강기
5	○ 한국승강기대학교 예산지원 현황	기업 승강기
6	○ 거창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현황 - 현황, 추진사항,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실적 등 - 기업 지원 시책 추진 현황	기업 승강기
7	○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기업 승강기
8	○ 투자 유치 실적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현황 - 사업개요, 지원실적,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투자유치
9	○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공동체 일자리
10	○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 공공일자리,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등	공동체 일자리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사업별 단계별(사업기간) 구분 작성	
11	○ 도시가스공급 운영 및 확대공급사업 지원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에너지
12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에너지
13	○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사항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에너지
14	○ 햇빛소득마을 공모 추진사항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에너지

□ 문화예술과(17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문화예술단체(행사) 지원현황 -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화정책
2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현황	문화정책
3	○ 향교 및 종교단체 지원 현황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문화정책
4	○ 상상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 사업개요, 연간 운영 예산, 운영 실적	문화정책
5	○ 신달자 문학관 운영 현황	문화정책
6	○ 거창문화재단 운영 현황	문화정책
7	○ 거창 한마당 대축제 추진현황 -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향후 발전대책 등	문화정책
8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사업 추진현황	예술진흥
9	○ 지역 예술활동 지원·발굴 추진 현황 - 극단·동아리 육성, 레지던시 사업	예술진흥
10	○ 거창국제연극제 추진현황 및 발전 대책	예술진흥
11	○ 아림예술제 보조금 정산현황 - 지원예산, 수입 및 지출 정산내역 등	예술진흥
12	○ 문화유산·향토문화유적 관리 및 보수현황	문화유산
13	○ 거창문화원 운영 및 지원현황	문화유산
14	○ 거창전수교육관 운영 및 지원현황 - 무형문화유산 행사현황 포함	문화유산
15	○ 분산성 국가유산(도기념물) 지정 추진현황	문화유산
16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현황	문화유산
17	○ 박물관 운영 관리현황 - 자료수집 및 전시회 개최 등 홍보실적, 관람인원 등 (근대의료박물관 포함)	박물관

□ 관광진흥과(10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2026 거창방문의 해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성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관광정책																								
2	○ On봄축제 추진현황 - 사업개요, 성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관광정책																								
3	○ 수송대 야행관광 조성사업 - 사업개요, 성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관광산업																								
4	○ 수송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성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관광산업																								
5	○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계획(안)	관광산업																								
6	○ 거창형 치유산업 육성 및 관광산업화 추진 현황 -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 -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관광산업																								
7	○ 거창군 관광캐릭터 활용 마케팅 홍보 현황 - 상표권 등록 진행 사항, 굿즈 제작 현황 등	관광 마케팅																								
8	○ 거창반값여행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등	관광 마케팅																								
9	○ 수송대 관광지 운영 내역(2024~2026) - 시설별 이용실적	수송대																								
	<table><tr><td>구 분</td><td>이용인원</td><td>수입금액</td><td>비 고</td></tr><tr><td>합 계</td><td></td><td></td><td></td></tr><tr><td>야 영 장</td><td></td><td></td><td></td></tr><tr><td>눈썰매장</td><td></td><td></td><td></td></tr><tr><td>오토캠핑장</td><td></td><td></td><td></td></tr><tr><td>입장료(주차료)</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이용인원	수입금액	비 고	합 계				야 영 장				눈썰매장				오토캠핑장				입장료(주차료)			
	구 분		이용인원	수입금액	비 고																					
	합 계																									
	야 영 장																									
	눈썰매장																									
	오토캠핑장																									
입장료(주차료)																										
- 시설보수 현황																										
10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실적 - 프로그램명, 월별 이용 인원, 세외수입 등	수송대																								

□ 복지정책과(13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								복지정책																					
2	○ 면우 광종석 선생 유허지 및 전시관 운영 현황								복지정책																					
3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 운영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복지정책																					
4	○ 긴급복지 지원실적 - 위기가구 발굴 및 예산 집행 현황 등								희망복지																					
5	○ 아립1004운동 추진현황 - 정기회원 및 구좌수, 일반모금액 - 현재까지 지원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희망복지																					
6	○ 자원봉사 기반 구축 현황								희망복지																					
7	○ 사회보장급여 제외·중지자 권리구제 현황								통합조사																					
8	○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읍면별 총괄자료, 2026년 기준)								기초생활																					
9	○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직권신청 사례 및 현장 발굴체계 운영 현황								기초생활																					
10	○ 자활복지 사업 현황 - 지역자활센터 <table><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시설장</th><th rowspan="2">규모</th><th rowspan="2">종사자 수</th><th colspan="3">보조금 지급내역</th><th rowspan="2">사업 참여자수</th><th rowspan="2">안전점검 및 조사사항</th></tr><tr><th>계</th><th>운영비 (인건비포함)</th><th>종사자 수당 사업비</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군 직접, 자활센터)								시설명	시설장	규모	종사자 수	보조금 지급내역			사업 참여자수	안전점검 및 조사사항	계	운영비 (인건비포함)	종사자 수당 사업비										기초생활
시설명	시설장	규모	종사자 수	보조금 지급내역			사업 참여자수	안전점검 및 조사사항																						
				계	운영비 (인건비포함)	종사자 수당 사업비																								
11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현황								기초생활																					
12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사유, 징수금액 등)								기초생활																					
13	○ 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 현황 - 경남형, 거창형 사업 - 4개 권역센터 운영 등								통합돌봄 TF																					

□ 행복나눔과(16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구분 작성)										노인복지	
	시설명	시설장	규모 (㎡)	종사 자수	보조금 지급내역(단위:천원)				수용 가능 인원	현 수용 인원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계	인건비	운영비	기타 (수당 등)				
2	○ 노인 복지증진사업 추진현황 - 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노인복지	
	사업명	사업내용	수혜대상	예산액	집행액	잔액						
	-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노인복지	
	사업명	사업내용	수혜대상	예산액	집행액	잔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 운영현황 ↳ 예산액, 주요업무 등												
3	○ 경로당 지원 현황(최근 2년간) - 신축, 개보수, 운영비, 난방비 지원현황 - 읍면별 작성										노인복지	
4	○ 삶의 쉼터 운영현황 - 기부금 접수 및 집행현황 - 식당 이용자(노인·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현황 -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등										노인복지	
5	○ 시니어클럽 운영현황 - 기본현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 기타 사업 현황										노인복지	
6	○ 장사 업무 추진 현황 - 공설 공원묘지(봉안당) 기본현황 및 이용 현황 - 공설공원묘지 위탁관리자 현황 - 무연고 사망자 지원 현황										노인복지	
7	○ 거창 시니어 카운티 운영 현황 -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노인복지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8	○ 장애인현황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현황 - 장애인 당사자 중심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명	사업내용	수혜대상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 장애인 단체 및 민간위탁운영 사업							
	단체 및 시설명	대표자	사업비 지원 내용					
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기타		
9	○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현황 - 시설, 종사자, 매출 및 순이익, 운영자금 교부 및 상환 현황 등							장애인 복지
10	○ 거창군 가족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 기본 및 운영현황, 다문화 가족 현황, 주요사업 현황 등							여성보육
11	○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운영 현황 - 기본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등							여성보육
12	○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 사업개요, 그간 추진사항, 향후 계획							여성보육
13	○ 영·유아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지원 현황 - 기본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 등							여성보육
14	○ 육아드림센터 건립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그간 추진 사항, 향후 계획							여성보육
15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현황							드림아동
16	○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추진현황							드림아동

□ 안전총괄과(15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재난종합상황 관리현황 - 현황, 관리체계,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안전관리
2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현황 -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안전관리
3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현황 -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안전관리
4	○ 군민 안심보험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안전관리
5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이행 현황 - 위치,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일, 지정내용, 표지판 등 정비현황	자연재난
6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현황 - 현황, 운영실적, 관리상태, 문제점 및 대책 등	자연재난
7	○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현황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자연재난
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 고견천 등 사업개요, 내용, 추진사항 등	자연재난
9	○ 120자원봉사대 활동 및 운영현황 - 현황, 활동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민방위
10	○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 신청건수 대비 설치 및 미설치 건수(읍면별 작성) - 미설치 가로등의 원인별 사유 및 대책 - 전기료 납부현황 - 유지보수 위탁관리 추진현황 - 태양광 가로등 설치현황	민방위
11	○ 농촌형소화전 설치 및 관리현황 - 현황, 활용실적, 관리상태, 문제점 및 대책 등	민방위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2	○ 민방위 업무 추진현황 - 비상급수시설, 주민대피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 - 민방위대 편성 및 활동, 교육현황	민방위
13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 현황, 운영실적, 문제점 및 대책, 정보보안 강화 방안 등	통신관제
14	○ 스마트 마을방송 운영현황 - 구축 현황 및 효과, 문제점 및 대책 등	통신관제
15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추진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황 - 관할구역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예방활동	중대재해 예방

□ 산 림 과(23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토석채취 허가·단속 및 복구현황 - 허가 및 복구현황, 단속실적, 사후관리현황 - 석산개발 및 채석장 복구지 사후 관리현황 - 복구 중인 사업장 추진상 문제점 등	산림조성
2	○ 조림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산림조성
3	○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 사업비, 입찰방법, 감독체계, 관리방법 등	산림조성
4	○ 거창화강석센터 운영 성과 및 홍보현황 - 운영개요, 추진사항, 홍보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	산림조성
5	○ 민간자본 이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산림조성 산림소득
6	○ 균유림 대부현황 - 지번, 임대인, 대부목적 - 무단 점용, 각종 위법사례 및 조치결과	산림소득
7	○ 임산물 소득지원 현황 및 관리실태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전망 등	산림소득
8	○ 임업직불금 추진실적 및 실태조사 결과(2024~2026) - 연도별 지급대상, 지급액 - 실태조사 결과: 등록사항 불일치, 준수사항 미이행, 지급제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산림소득
9	○ 산사태 예방·대응 관련 현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등 - 산사태재해복구사업 현황 등	산림소득
10	○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	산림소득
11	○ 산지전용 허가·변경·협의·신고 현황 -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산림보호
12	○ 산림보호(임야관리) 관련 현황 - 임도시설 개설 및 구조개량, 유지보수 현황	산림보호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 입목 벌채허가·신고 현황 - 산림형질변경 단속 및 처리현황 - 수목(소나무) 굴취허가 현황	
13	○ 보호수·보호림 정비현황 - 지정현황, 정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	산림보호
14	○ 산불전문진화대 운영현황 - 장비지급내역, 교육횟수, 훈련내역 등	산림보호
15	○ 가조 수월지구 고건사 산불진화임도 신설 추진 현황 - 사업개요,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산림보호
16	○ 마을 정자목 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등(읍면별)	공원녹지
17	○ 일자리창출 공공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	공원녹지
18	○ 공원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군 전역) - 개요, 추진계획,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 등	공원녹지
19	○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현황 -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공원녹지
20	○ 가로수 조성 관련 관리현황 - 수종별 식재연도, 구간별 소요사업비 - 가로수 고사목 현황 및 식재계획 - 가로수(수형관리) 증장기 계획수립 현황 - 도시숲, 가로수 조성계획 등	공원녹지
21	○ 영호남 산마루 숲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기본계획안 등	공원녹지
22	○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운영 현황 - 위탁현황,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방문객, 수입현황 등	산림 레포츠
23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관리 운영 현황 - 최근 3년간 관람객 수 및 수입 현황 - 잔도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등	힐링랜드 운영

□ 환 경 과(23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환경민원(소음, 악취 등) 접수 및 처리현황 - 신고인, 접수일,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환경정책																						
2	○ 환경사범 수사 및 환경신문고 운영현황 - 접수 및 처리 현황,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등	환경정책																						
3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환경정책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부과액</th> <th colspan="2">징수액</th> <th colspan="2">채납액</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부과액		징수액		채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구분	부과액			징수액		채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채납액 문제점 및 징수대책																							
4	○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환경정책																						
5	○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 보조금 지원 전기차 명의이전 내역 포함	환경정책																						
6	○ 미세먼지 관리 저감 대책 추진현황 -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환경정책																						
7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 - 폐수, 대기 사업장 -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 - 폐기물 배출사업장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정책																						
8	○ 다회용기 사용 실적 - 연번, 행사명, 사용수량, 사용금액 등	자원순환																						
9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현황 -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읍면별) -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읍면별) -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관련 주민 홍보 현황 -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홍보 실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자원순환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수거운반 대행 현황 - 재활용품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설치·관리 현황																																
10	○ 건축폐기물 처리현황 - 발생현황, 처리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자원순환																									
11	○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위탁 처리현황							자원순환																									
12	○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상금 지급현황(읍면별) - 수집·지급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 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 구분							자원순환																									
13	○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현황 -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단위:천원,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기간</th><th rowspan="2">반입량</th><th colspan="3">처리량</th><th colspan="2">외부반출</th><th rowspan="2">적치량</th></tr> <tr> <th>연</th><th>월</th><th>합계</th><th>소각</th><th>재활용</th><th>반출량</th><th>금액</th></tr> </thead> <tbody>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신설) 추진현황							기간		반입량	처리량			외부반출		적치량	연	월	합계	소각	재활용	반출량	금액										자원순환
기간		반입량	처리량			외부반출		적치량																									
연	월		합계	소각	재활용	반출량	금액																										
14	○ 불법투기 무인 감시장비 운영 현황 - 연번, 설치위치, 설치일, 구입 및 설치비용, 점검현황, 연간관리비, 연간 단속 건수							자원순환																									
15	○ 수질 오염원 관리현황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 등 - 지하수 폐공 및 방치공 관리 현황 - 불법 지하수 개발행위 지도·단속 실적, 처분내역							수질관리																									
16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 연도별, 공종별, 읍면별 사업비							수질관리																									
17	○ 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현황 - 사업개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운영 계획 등							수질관리																									
18	○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							수질관리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9	○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과 예방시설 설치·보상금 지급 -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자연환경
20	○ 야생동물 포획허가 운영 현황 - 피 포획허가자, 포획허가 개체 수, 확인표지 발급수량, 확인표지 발급수량, 확인표지 반납수량, 관리대장 기록 여부, 포획물 처리실태	자연환경
21	○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거창창포원 주요 사업 현황 - 주요 사업별 추진 현황 - 제2창포원 사업 추진 현황 - 2026 대한민국 거창 정원치유박람회 추진현황	창포원 운영+ 시설
22	○ 거창창포원 일주관람차 운영 현황 - 상반기 운영 실적, 문제점 및 대책	창포원 운영
23	○ 거창창포원 생태문화복합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진행사항, 향후 계획 등	창포원 시설

□ 건설교통과(24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현황 - 공사금액(부대비 포함) 1억원 이상 사업 중 - 설계변경금액 1천만원 이상	건설담당																						
2	○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 현황(2023년~2025년) - 사업명, 사업개요, 설계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등	건설담당																						
3	○ 합천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지원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 연도별, 공종별, 읍면별 사업비	건설담당																						
4	○ 불법하도급 단속반 운영 실적 - 연도별 운영 실적, 조치결과 등	건설담당																						
5	○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부과액</th><th colspan="2">징수액</th><th colspan="2">체납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체납액 문제점 및 징수대책 - 주기장 현황 및 운영 실적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건설담당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	○ 노후 저수지(재해위험) 정비현황 - 현황, 정비실적, 문제점 및 미정비 정비계획 등	농업기반																						
7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	농업기반																						
8	○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현황 - 읍면별(마을), 관정개발(중·대형) 내역 -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민원 접수내역	농업기반																						
9	○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	농업기반																						
10	○ 농업기반시설 정비현황 - 농로 포장(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 내역	농업기반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1	○ 준영구 논두렁사업 추진현황 - 현황, 추진사항, 예산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	농업기반
12	○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 현황, 정비 및 관리실태, 향후 정비계획 등	하천담당
13	○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하천담당
14	○ 명품 거창위천 조성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하천담당
15	○ 광역 교통망 확충 관련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추진현황 - 남부우회도로 추진현황 - 달빛 철도 거창역사 유치 -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 추진현황	도로담당
16	○ 도로망 확충과 불량교량 정비 및 안전진단 현황 - 군도·농어촌 도로 현황 및 미개설 노선에 대한 대책 - 불량교량 정비 및 안전진단 현황 -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현황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도로담당 교통민원
17	○ 건설사업 보상금 미지급현황(사업·시행처별) - 사업장, 필지수, 대상자수, 보상금액, 미지급사유 향후 처리계획 등	과공통
18	○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	건설담당
19	○ 브라보·부르미 택시·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교통정책
20	○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현황 -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현황(업체별) - 지원대상 및 실적과 손실보상 현황	교통정책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 공영버스 구입 지원현황 - 마을 순환버스 운영 현황							
21	○ 택시업계 관련 현황 - 택시대수 현황(적정대수, 초과대수) - 초과대수에 대한 감차 추진현황 및 보상계획 등							교통정책
22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교통정책
23	○ 교통 편의시설 확충 추진현황							교통민원
24	○ 주차장 확보현황							교통민원
	계	노상	건축물부설	기계식	공영주차장	개인주차장	비고	
	개소/면수							
	- 주차장 개설현황(최근 3년간) - 주차장 개설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처분 현황							

□ 도시건축과(19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송정택지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 - 민원발생(주민건의) 현황,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도시계획
2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 -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	도시계획
3	○ 2035 군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 - 사업개요, 그간 추진사항, 향후 계획	도시계획
4	○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읍면별) - 광고물 종류별 전체 현황 - 불법 광고물 정비(조치)현황	도시계획
5	○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도시개발
6	○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도시개발
7	○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도시개발
8	○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읍면별) - 추진사항, 문제점 및 향후 미개설 노선 대책 등	도시개발
9	○ 감악산권 친환경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도시개발
10	○ 거창교 재가설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도시개발
11	○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기본계획안	도시개발
12	○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현황	스마트 도시
13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추진현황 -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	건축행정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 빈집정비사업(슬레이트·일반지붕 구분) 추진사항 - 귀농·귀향인 주택(빈집)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 농업인주택 등 설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	
14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일반, 승강기) -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대책 등	건축행정
15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건축행정
16	○ 시트법(3종)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 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사항	건축행정
17	○ 건축공사현장(연면적 1천㎡이상) 안전관리에치금 예치 현황	건축행정
18	○ 건축복합민원 처리 현황	건축민원
19	○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 시행 현황 - 용도변경 신고처리, 가설건축물 등	건축민원

□ 농업축산과(20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추진 사항 - 정부동향,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농정담당
2	○ 농업발전자금 조성 및 집행현황 - 조성현황, 추진(집행)계획,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	농정담당
3	○ 농지이용실태 조사 현황 및 위반자 조치사항(최근 3년간)	농정담당
4	○ 축제 운영 현황 - 거창 아리미아 꽃축제, 녹색곳간거창 농산물 대축제	농정담당
5	○ 농업회의소 운영현황 -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농정담당
6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 현황 - 지원대상 농가수, 선지급액, 이자지원액	농정담당
7	○ 농어업인 수당 지급관련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농정담당
8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 - 현황,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 예산 지원현황 등	농업인 육성
9	○ 농업인역량강화 및 단체관리 현황 - 현황, 운영·관리실태,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농업인 육성
10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추진현황 -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항 - 농가도우미 지원사항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항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항 -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항 ※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농업인 육성
11	○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현황(세부사업별)	농업인 육성
12	○ 농업인관련 교육현황 - 사업개요, 분야별 인원, 전문강사, 향후 추진계획 등	농업인 육성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3	○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사업 관련 추진현황 -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 ※ 사업별 현황,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축산담당 동물복지 담당
14	○ 축산물 브랜드육성 추진현황 -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축산담당
15	○ 축산업 육성사업 관련 추진현황 - 고품질 한우산업육성사업 추진사항 -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사업 추진사항 ※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축산담당 동문복지 담당
16	○ 가축 관련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 - (한우·한돈, 닭, 오리, 양봉, 염소) 사업별 지원현황 등	축산담당
17	○ 조사료 자급률 확대 추진 현황	축산담당
18	○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 추진현황 - 발생현황, 방역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가축방역
19	○ 반려동물 관련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반려동물 놀이시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동물복지
20	○ 가축분뇨 처리현황 -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문제점 및 대책 등	동물복지

□ 미래농업과(13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스마트 농업
2	○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등	스마트 통업
3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스마트 농업
4	○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스마트 농업
5	○ 유기농복합단지 조성 현황 -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친환경 농업
6	○ 3무(無) 농업실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친환경 농업
7	○ 친환경농업 지원 관련 추진현황 -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추진사항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추진사항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사항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사항 ※ 사업별 현황(지원기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친환경 농업
8	○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친환경 농업
9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현황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 육성지원 등	농촌 융복합
10	○ 거창사과푸드코트(G-애플) 운영 추진 현황 - 사업개요, 그간 추진 실적, 문제점 및 향후계획	농촌 융복합
11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공공급식 납품 대상 -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사업 내역 -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내역 - 거창산 농산물 공급내역 / 비율	지역먹거 리 공공 먹거리 TF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2	○ 거창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 로컬푸드 활성화 등	공공 먹거리 TF
13	○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현황 - 기본현황, 지원 및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계획 등	공공 먹거리 TF

□ 농업소득과(17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고품질쌀 생산 관련 추진현황 -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지원사항 - 병해충 방제 지원사항 - 고품질 쌀생산 지원 및 생산대책 - 쌀전업농 육성 지원사항 - 브랜드쌀 육성 지원사항 등 ※ 사업별 현황(지원기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식량작물
2	○ 농업직접지불제 관련 추진현황 -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추진사항 ※ 사업별 현황(지원기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식량작물
3	○ FTA대응 주요 추진현황 - 과수, 축산, 원예특작 등 농업관련 전 분야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과수담당
4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 현황(대상농가, 가입실적) 및 대책 등	과수담당
5	○ 사과테마파크 및 체험시설(고제) 운영현황 - 목적, 개요, 추진사항, 운영내용, 문제점 및 대책 등	과수담당
6	○ 미래형 다축과원 조성 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참여농가, 출하량 - APC 공선 참여 방안	과수담당
7	○ 기후위기 대응 과수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 -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	과수담당
8	○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관련 추진현황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사항 ※ 사업별 현황(지원기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원예특작
9	○ 농특산식품 수출 추진현황 - 수출현황,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수출확대 지원사업 현황	수출유통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0	○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관련 추진현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현황	수출유통
11	○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구매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수출유통
12	○ 거점 APC 운영현황 - 연혁, 시설 및 운영현황, 운영실적, 수입 및 지출 정산내역 등	수출유통
13	○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단 운영현황 - 개요, 추진사항, 운영실적, 향후계획	수출유통
14	○ 농산물 기준가격 보상제 운영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수출유통
15	○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사업 추진현황	농기계
16	○ 농업기계화사업 관련 추진현황 -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사항 - 농기계 구입지원 및 사후 관리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항 ※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농기계
17	○ 중·소 고령농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실적 - 읍면별 수혜 농가수, 면적 - 문제점 및 대책	농기계

□ 행복농촌과(13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농촌협약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농촌진흥
2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	농촌진흥
3	○ 마을권역단위사업 운영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농촌진흥 농촌개발
4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현황	농촌개발
5	○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추진현황	농촌개발
6	○ 지역 거점 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현황	농촌진흥
7	○ 거창읍 대동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농촌개발
8	○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 운영방식, 인원, 사업내용, 사업비 등	농촌진흥
9	○ 지역활동가 육성 현황(2024~2026) - 육성 인원, 사업비, 활동내역 등	농촌진흥
10	○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귀농귀촌
11	○ 거창한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프로그램 운영, 향후 계획 등	귀농귀촌
12	○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 - 마을(권역)명, 위치, 시설현황, 지정연도, 운영자, 운영 실적, 지원현황	귀농귀촌
13	○ 거창 별바람언덕 활성화 계획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별바람 언덕운영

□ 보건정책과(11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	보건정책
2	○ 보건지소, 진료소 및 공중보건의 근무관련 복무점검 및 친절교육 추진현황	보건정책
3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보건정책
4	○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 - 사업개요, 시설개선내용, 의료장비 구입 등	보건정책
5	○ 의약품 구입현황 - 품명, 일자, 금액, 구입처, 방법(입찰, 수의 등)	보건정책
6	○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 현실태, 문제점, 개선대책, 지원실적 등	공공응급 의료
7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공공응급 의료
8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 -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공공응급 의료
9	○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현황	감염병 관리
1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발생·신고 현황, 조치사항	감염병 관리
11	○ 지역사회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뇌혈관, 특수질환)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난소암 건강검진	보건민원

□ 건강증진과(12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군민건강증진시책 추진현황	건강증진															
2	○ 모자보건 무료검진사업 추진현황	건강증진															
3	○ 출산장려 지원대책 추진현황 - 임신 전·후 각종 지원 - 분만취약지역 24시간 산부인과 설치 및 지원 등	건강증진															
4	○ ‘60-64세’ 임플란트 지원 내역(2025~2026년) <table><tr><td>연번</td><td>성명</td><td>나이</td><td>지원금액(천원)</td><td>비고</td></tr><tr><td>합계</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연번	성명	나이	지원금액(천원)	비고	합계										건강증진
연번	성명	나이	지원금액(천원)	비고													
합계																	
5	○ 노인성 안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실적	건강지원															
6	○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현황	건강지원															
7	○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현황	건강지원															
8	○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	건강지원															
9	○ 지역사회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 암조기검진 추진실적	건강지원															
10	○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사항 - 인원, 연령, 증상, 연간 본인부담액, 군 지원액	건강지원															
11	○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치매안심															
12	○ 정신건강 관련시책 추진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포함	정신건강															

□ 수도사업소(11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상·하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 - 사업비 1천만원 이상 공사	관리 담당																						
2	○ 상·하수도 원가계산 결과(2024년~2026년)	관리 담당																						
3	○ 마을상수도사업 관련 추진현황 - 시설현황(읍면별 계곡수, 지하수 등 구분) - 2025년도 개·보수 현황(읍면별, 마을별) - 2026년도 개·보수 계획(읍면별, 마을별)	상수도																						
4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상수도																						
5	○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 및 지정 추진현황 - 시설명, 지정면적, 지정일자, 관리사항 등	상수도																						
6	○ 지방상수도 관리현황 - 기본현황 - 급수구역확대 추진현황(읍면별, 마을별)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상수도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부과액</th><th colspan="2">징수액</th><th colspan="2">체납액</th><th rowspan="2">비고</th></tr><tr><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체납액 문제점 및 징수대책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	○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 - 현실태,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상수도																						
8	○ 상수도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위원회 운영현황 -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위원회 운영현황	상수도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9	○ 하수도사업 관리현황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면 단위 시설 사업 추진현황(소규모 하수처리시설포함)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하수도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부과액</th> <th colspan="2">징수액</th> <th colspan="2">체납액</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체납액 문제점 및 징수대책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부과액</th> <th colspan="2">징수액</th> <th colspan="2">체납액</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체납액 문제점 및 징수대책																								
○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현황 - 개요,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하수도																							
○ 하수관거 BTL 사업현황 및 임대료 지급계획		하수도																						

□ 체육시설사업소(10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스포츠 유망주 발굴 및 전문선수 육성 현황 - 종목, 인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용	체육진흥
2	○ 체육회 사무국 운영현황	체육진흥
3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현황	체육진흥
4	○ 체육시설 인프라 현황(군 전체 현황 작성)	체육시설
5	○ 거창스포츠파크 운영현황 - 시설개요, 월 이용인원, 수입 등	체육시설
6	○ 제2창포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추진 현황	체육시설
7	○ 거창스포츠파크 실외 골프연습장 개축사업 추진현황	체육시설
8	○ 읍면 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현황 - 위치, 면적, 주요시설, 사업비, 연 이용인원 등	체육시설
9	○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 - 사업개요, 추진사항, 유치실적, 효과 등	스포츠 마케팅
10	○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 시설개요, 지도자수, 월 이용인원, 수입현황 등 - 시설 등 보수현황	국민체육 센터

□ 거창골프장사업소(4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거창CC 이용자 및 매출액 현황 - 이용자(명) <table> <tr> <th>연도</th> <th>월별</th> <th>합계</th> <th>주중</th> <th>주말</th> </tr> <tr> <td></td> <td>합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월</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월별매출액(천원) <table> <tr> <th>연도</th> <th>월별</th> <th>합계</th> <th>주중</th> <th>주말</th> </tr> <tr> <td></td> <td>합계</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1월</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순수익(천원) <table> <tr> <th>연도</th> <th>수익금</th> </tr> <tr> <td>2024</td> <td></td> </tr> <tr> <td>2025</td> <td></td> </tr> </table>	연도	월별	합계	주중	주말		합계					1월									연도	월별	합계	주중	주말		합계					1월									연도	수익금	2024		2025		경영기획
연도	월별	합계	주중	주말																																												
	합계																																															
	1월																																															
연도	월별	합계	주중	주말																																												
	합계																																															
	1월																																															
연도	수익금																																															
2024																																																
2025																																																
2	○ 특별회계 운영 및 공기업 경영성과 분석 결과	경영기획																																														
3	○ 투자비 상환 현황 및 향후 계획	경영기획																																														
4	○ 거창CC 군민 수혜 방안	경기운영																																														

□ 거창사건사업소(6건)

연번	요 구 내 용 (항 목)					비 고
1	○ 거창사건 배·보상법안 제정 지원 현황					
2	○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원 내역(2025~2026)					
	연 번	대상자	희생자와의 관계	지원금액	비 고	
	합 계					
	1	김○○				
3	○ 거창사건 대국민 홍보 추진현황					
4	○ 국화관람회 추진현황					
5	○ 계절별 꽃단지 추진현황					
6	○ 시설 개보수 추진현황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서식

□ 공통항목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조치계획	완결여부	비고

2. 직원 및 사무분장 현황

○ 직원현황

계(명)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비고

○ 사무분장 현황

담당명	담당사무	비고

3.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분야	사업명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4. 군정질문 조치현황

질문의원	질문일자	질문요지	조치사항	향후계획

5. 5분 자유발언 조치현황

발언의원	발언일자	발언요지	조치사항	향후계획

6. 의원발의 조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발의자	제·개정일	조례명	조치사항	향후계획

7. 연구 용역 현황

(단위: 천원)

용역명	용역사	용역기간	용역비	계약방식	계약근거	홈페이지 공개여부

주)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연도별 별도 작성

8.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 현황

연도	기본계획명	계획내용	근거	수립일	시행일	시행기관

9.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진도 등)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10.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이월사유	추진상황 (진도 등)	비고

11. 사업 중 미착수 사업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미착수 사유	향후계획

주)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중 미착수된 사업/ 연도별 별도 작성

12. 부서별 예산변경 사용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과목	예산액	

주) 연도별 별도 작성

13. 국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비 고
				국비	도비	군비	

주)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연도별 별도 작성

14. 도 재정건의사업(도지사 포괄사업) 예산 확보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계	2026년	2025년	2024년	비 고

주) 최근 3년간(2024~2026) 작성

15.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자금수령액 (A)	집행액 (B)	반납액 (A-B)	반납율

주)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50%이상 집행잔액 반납 사업

16.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보조사업명	대상자	사업내용	2026년 사업비				2025년 지원
			계	국도비	군비	자부담	

주)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1천만원 이상

17. 집단민원 처리현황

구분	민원인	발생일	민원요지	처리내용 (미처리 사유)	처리일자

주) 연도별 별도 작성

18.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현황

민원명	민원인	접수일	처리불가 사유	조치결과		비고
				일자	내용	

19.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위원회명	설치연도	인원	위원회 기능	운영실적(회)		비고
				2024	2025	

20. 출연기관 지원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근거	지원액	비고

주) 연도별 별도 작성

21.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무명	수탁기관	위탁액	위탁기간	선정방법	위탁근거

주) 연도별 별도 작성

22.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세 목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주요체납사유	징수계획

주) 연도별 별도 작성

23. 기금 운용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이월액	수 입					지출	2026년 연도말 현재액
		출연금	보조금	융자 회수금	예탁금 상 환	이자 기타		

주) 2026년도 기준

24. 융자금 및 채권 미회수 현황

(단위: 천원)

회계명	사업명	대상자	금 액	발생년도	비 고

주)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 작성

□ 부서항목

○ 부서별로 요구내용(항목)을 정확하게 작성

※ 작성서식은 전년도 작성자료 참고

(금액단위가 없는 경우는 천원단위 기준)

○ 작성기간: 2025. 1. 1 ~ 2026. 6. 30.

※ 업무의 연관 및 연속성 등 감안 감사범위 이전 사무도 포함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근 3년간 사무도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편철요령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자료 분량이 많을 경우 1, 2권으로 분류

○ 전체목차

- 부서별 ①②③

○ 부서목차

- 공통항목 ①②③

- 개별항목 ①②③

※ 목차별 페이지 부여/ 부서별 색 간지

(참고)

- 제목(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목차(부서별/ 페이지 부여)

- 부서(공통·개별항목 구분/ 페이지 부여)

- 내용(공통·개별항목 순서)

※ 공통항목에 해당 없는 경우도 서식 안에 “해당 없음” 기재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8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 구 교 육 과	16
4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행 복 나 눔 과	21
5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 복 나 눔 과	28
6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행 복 나 눔 과	33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7. 1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7.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7.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신고포상금 지급의 신청 및 방법을 정함(안 제11조)
- 2). 신고포상금의 환수를 정함(안 제12조)
- 3) 신고포상금관련 비밀유지 등을 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개정의 필요성

- 정부는 지난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

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

(①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②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③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대폭 강화, ④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⑤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을 논의함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 제재금은 부정이익의 8배, 신고포상금은 환수금액의 30%로 상향
- 온오프라인 부정수급 제보 채널 개설
-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 제재 범위 등을 심의
- 보조금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 관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수급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나. 관계 법령 검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지급시기, 지급기준 및 공동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

면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 신고 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 신고 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 신고 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 포상금이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 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 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환수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신고포상금의 환수 및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제32조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음.

다. 개정안 검토

- 해당 개정조례안 제1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품권 지급의 경우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을 포상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치법규와의 저촉 사항은 없음.

〈참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안 제12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 및 착오 지급 등의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제3항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포상금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살펴보면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반환명령 금액 등의 30퍼센트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비용추계서에는 신고포상금을 50만원만 산정하고 있을 뿐, 예상 신고 건수, 예상 환수 금액, 과거 부정수급 발생현황 등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고포상금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라. 종합 검토

-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위배됨이 없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 시행 이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3조(신고포상금관련 비밀유지 등) 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7. 1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7.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7.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가. 제안이유

-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 과제 정비,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해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정부합동평가) 법령불부합 정비(안 제1조·제2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정부합동평가) 사업자차별 규제 개선정비(안 제3조)

-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 “우선” 삭제

3)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안 제4조~제17조)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거창담당관 ⇒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특허청⇒지식재산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가. 조례안의 개요

-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변경된 법령명, 행정기관 명칭, 인용조문 등을 현행화 하고, 일부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령불부합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일괄 개정 방식 및 조례안의 일괄 개정 사항

- 해당 개정조례안이 채택한 일괄 개정(정비) 방식은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조직 개편, 법령명 및 행정기관 명칭 변경, 인용조문 정비 등 공통된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개별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개정 대상이 유사한 여러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입법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조례의 실질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널리 활용함.
- 따라서, 해당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명, 행정기관 명칭 및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괄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이나 정부조직 개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법령불부합 사항이 누적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자치법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 행	개 정
제1조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2조제2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2조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 항제2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3조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제명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거창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	우선 구매	구매
		제3조	우선구매에 대해	구매에 관하여
		제4조제1항	우선구매	구매
		제5조제1항	우선구매 촉진	구매촉진
		제5조제1항 제1호	우선구매	구매
		제6조 조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	지역상품 구매
		제6조제1항	우선구매	구매
		제6조제2항	우선구매	구매
제4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제3호	353방첩부대 방첩관	국군 339방첩부대 방첩관
		제3조제2항 제4호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거창담당관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제3조제8항 제3호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9862부대 3대대 동원담당 과장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동원과장, 거창군 예비군 지역대장
제5조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특허청	지식재산처
제6조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9조제1항	특허청장	지식재산처장
제7조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2조제2항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8조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4조제3항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9조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0조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조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1조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4조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2조	거창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6조제1항	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6조제3항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제14조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제4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거창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14조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제7호	기획개정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제15조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제4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제16조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제38조제1항제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제17조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법령불부합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선 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3조 중 “우선구매에 대해”를 “구매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 촉진”을 “구매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6조 조 제목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 구매”를 “구매”로 한다.

제4조(「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조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군 339방첩부대 방첩관

4.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제3조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동원과장, 거창군 예비군 지역대장

제5조(「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6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4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를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거창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각각 한다.

제15조(「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1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7. 1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7.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7.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①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희 거주·공용공간 조성

1. 제안이유

- 2025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로컬유희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공용공간 조성하여 체류형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희 거주·공용공간 조성
- 2) 총사업비 : 1,530.5백만원(특교세 1,000백만원, 군비 530.5백만원)
- 3) 사업기간 : 2025. 8. ~ 2026. 12.
- 4) 사업위치 :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09-10
- 5) 주 요 내 용: 로컬유희 거주 및 공용공간 조성(2층, 연면적 435.02㎡)
 - 1층 : 주민공동시설 1호(66.24㎡), 단독주택 2호(60.03㎡, 61.2㎡), 계단실 1호
 - 2층 : 단독주택 3호(66.24㎡, 60.03㎡, 61.20㎡), 계단실 1호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사업내용	비고
		소재지	지목 (형식)	면적				
계					435.02	1,530,500		
취득	건물	북상면 갈계리 1109-10	건물 1동 (지상2층)	435.02	1,530,500	2026. 9.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단독주택 5호, 주민공동시설 1호)	신축

다. 추진경과

- 1) 2025. 5.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 선정
- 2) 2025. 8. ~ 11. :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건축기획 용역 시행
- 3) 2025. 12. :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공공건축 심의
- 4) 2026. 1. ~ 5. :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시행

라. 향후계획

- 1) 2026. 7. ~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 2026. 12. ~ : 로컬유학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마. 기대효과

- 1) 로컬유학을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2) 거창군 로컬유학 활성화로 교육도시 거창 브랜드 이미지 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① 거창군 고향올래사업 로컬유학 거주·공용공간 조성

가. 제안이유

- 해당 계획안은 거창군이 2025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로컬유학생과 그 가족의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공용공간을 조성하고,

- 이에 따른 건축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련법령 검토

- 취득 대상은 연면적 435.02㎡의 지상 2층 건축물 1동으로, 총사업비는 15억 3,050만원(특별교부세 1,000백만원, 군비 530.5백만원)이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취득재산의 경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군의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됨.
- 또한,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소요 예산 및 기준가격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다. 사업의 필요성

- 해당 사업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교육도시 거창의 경쟁력 강화 및 북상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과 정책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북상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과 도보 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부지 기확보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안정성이 도모됨.

라. 종합검토

- 해당 사업은 그간 업무보고,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 사업계획(연면적 369.6㎡)과 비교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65.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규모 사유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향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시설의 운영주체, 관리방식,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활용계획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7. 1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7.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7.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6.10.7. 만료됨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 위탁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시 설 명: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 2) 위 치: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 3) 시설규모

구분	부지	건물			정원		비고
		계	공장	창고	종사자	근로자	
현황	6,612㎡	2,201㎡	1,200㎡	1,001㎡	8명	36명	

- 4) 사업내용: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5) 위탁대상 사무

가) 운 영

-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나) 시설물 관리: 장애인근로사업장 건축물, 기계설비, 차량, 물품 등

6) 위탁방법: 공개모집

7)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8) 소요예산: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 중인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7일 만료됨에 따라,
-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3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일반 작업환경에서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 이에,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와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3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과거 운영법인의 수탁 포기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겪었으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며,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생산설비 확충 및 직업재활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근로기회와 소득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시설 특성과 운영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동의안은 위탁대상 사무, 위탁방법, 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운영예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개모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 절차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

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 제79조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재원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 2026년 소요예산 : 547,112천원(도 20,508 군 526,604)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①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 따라서 해당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충족하고 있으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7. 1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7.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7.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들의 개인 위생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사업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민간위탁 대상사업: 거창군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 2) 위탁사무
 - 가)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1대
 - 나)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다) 이동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및 관리
- 3)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4) 위탁방법: 공개모집

- 5) 수탁자격: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 가능
- 6)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이동목욕차량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목욕과 건강 상태 확인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이용자의 특성과 복지 수요에 대한 이해와 현장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무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제출자료에서도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생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 이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탁대상 사무, 위탁기간, 위탁방법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제시와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 절차 또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동목욕차량은 201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해당 동의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추고, 전문성을 활용한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7. 1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7. 1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6. 7.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과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2) 위탁참여인원: 18명(예정)

3) 위탁사무

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참여형 업무 수행

나)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다)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 4)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5) 위탁방법: 공개모집
- 6) 수탁자격: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 가능
- 7)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해당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복지일자리 참여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애인의 특성과 직업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인 만큼, 기존 수탁기관의 사업 운영실적과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안 전 총 괄 과	1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과	7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 업 소 득 과 체 육 시 설 사 업 소	11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3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7. 1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7. 10.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가. 제안이유

- 초대형 산불,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 발생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주민
대피 체계 수립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2) 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대피안내요원 지정을 정함
(안 제4조~제6조)

다. 정보공개의 원칙, 대피명령 발령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라. 대피 교육·훈련, 경비지원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관련 법령 및 상위법 검토 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에 따라 본 조례안의 대피명령 및 장소 지정 등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 하며,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라 전형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주민의 생명 및 안전 도모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는 시장·군수에게 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피에 관한 지침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거창군은 산지가 많아 산사태 위험지역이 존재하고, 황강·위천 등 하천 주변 침수 위험이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지역적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체계적 재난 대피 관리가 꼭 필요한 실정임.

○ 다만, 그동안 조례 없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과 군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한다.
5.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등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창군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3. 대피장소 지정 등
4. 대피정보 공개
5. 대피명령 발령 등
6. 대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피장소 지정)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피안내요원 지정) ① 군수는 주민들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피안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등

제7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군수는 주민들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2. 다음 각 목의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3. 그 밖의 대피에 관한 정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제8조(대피명령 발령)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민방위 사이렌, 마을방송, 길거리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전파해야 한다.

제9조(대피교육·훈련) 군수는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등과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군수는 주민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발생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등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3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7. 1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7. 10.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신동일]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개정 사항 반영함(안 제4조·제5조)
 -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2) 위원 위촉 시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등을 정함(안 제4조,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시키며, 순환 경제 관련 정책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 안 제1조, 제4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법정 명칭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을 의무화한 것은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기후정의’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기능에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4조제1항제8호)시키고,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은 유사·중복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행정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입법 조치이며,

- 탄소중립 정책과 자원순환(순환경제) 정책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거창군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적·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법 제22조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11조 각 호의 사항

제5조제3항제4호 중 “사람”을 “사람. 이 경우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창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창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31.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7.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7. 10.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①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

1. 제안이유

- 가. 팔레트, 보관상자의 야외적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필요('24년 경남도 안전점검 지적사항)
- 나. 기자재 창고 신축으로 작업공간 확보, 위생환경 및 물류 동선 효율화

2.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
- 나. 사업위치 : 거창읍 대평리 1347, 서북부경남 거점APC
- 다.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 240, 군 960)
- 라. 사업기간 : 2026. 4. ~ 12.
- 마. 주요내용 : 기자재 보관창고 및 비가림시설 신축(2,000㎡)
 - 부지면적 37,263㎡(토지 소유자 : 거창군)
 - 80m(길이) × 25m(폭) × 11m(기둥높이) / 가설건축물(막구조)

②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 매입을 통한 규모 확장으로 이용 편의성 개선 및 시설 안정성 확보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나. 사업비 : 800백만원(군비)
- 다. 위치 :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1, 102
- 라. 사업기간 : 2026. 1. ~ 2027. 5.
- 마.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9홀 조성 및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병준]

①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의 건은

- 서북부경남 거점APC 내 팔레트와 보관 상자의 야외 적재로 안전사고 위험, 기자재 노후화, 작업공간 부족, 물류 동선 비효율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경상남도 안전점검에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인 만큼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 기존 APC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토지 매입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②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건은

- 당초 국유지(월계리 1276-31)만을 활용하는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유지 매입이 추가된 사항으로

- 주민들의 확장 건의를 수용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과 토지 취득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 취득 대상 토지의 규모는 2필지, 2,601㎡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에 해당하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음.
- 토지 취득을 통해 코스 배치의 효율성, 휴게시설 설치 공간 확보 및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등 일정 부분 사업효과가 기대되나, 전 읍·면 파크골프장 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사유지 추가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